



많은 먼지를 흡입해 기관지 천식이 악화됨으로써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이다.

서울행법 2001구7199

[판결요지]

망인은 소외 회사의 자재과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및 먼지 등으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유발되고, 그 이후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에서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[이유]

1 이 사건 처분의 경위

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조○○(이하 '망인' 이라 한다)는 사무용품 제조업체인 ○○세라믹(이하 '소외 회사' 라 한다)의 자재과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1998. 5. 28 14:40경 선행사인 기관지 천식, 직접사 인 급성 천식 발작(추정)으로 사망하였다.

이에 원고는 같은 해 7. 13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

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 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(이하 '종전 청구' 라 한다)하였으나, 피고는 같은 달 16일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

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(이하 '종전 처분' 이라 한다)을 하였다. 위 종전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자, 피고는 같은 해 11. 19일 위 종전 처분과 같은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,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, 위 종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그 후 원고는 다시 2001. 1. 15 종전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

다 청구(이하 '이 사건 청구' 라 한다)하였으나, 피고는 같은 달 27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종전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이중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,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, 이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 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망인의 경력, 업무내용 및 근무 환경

망인이 1993. 10.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 까지 자재과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입·출고를 담당하여 왔다.

망인은 사망 당일인 같은 달 28일까지 다른 자재과

직원들과 함께 방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지하 자재창고에 적치되어 있는 자재를 직접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, 위 지하자재창고는 평소 적치된 자재로 인하여 먼지가 많았으며, 환풍기가 5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,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.

한편 소외 회사는 1997.1월경 부도가 나게 되어 자재과 직원을 감축하였는데,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은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.

나.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원인

1) 망인은 기관지 천식으로 1995.9.23일부터 11.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, 같은 해 11.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사이에는 기관지염 및 그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하였고, 그 후에도 사망하기 전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었다.

2) 망인은 사망 당일인 1998.5.28일 오전 위 지하 자재창고에서 자재운반작업을 수행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13:20경 소외 회사의 1층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잡고 고통을 호소하여, 동료 직원들에 의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의식불명인 상태로 후송되었다. 망인은 병원에서 기도 삽관, 약물투여 및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를 받았으나, 같은 날 14:40경 기관지 천식의 악화로 인한 급성 천식발작으로 사망하였다.

3) 기관지 천식은 다양한 자극에 의하여 기관지가 수축함으로써 발작적인 호흡곤란, 기침, 가래, 천명 및 가슴답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으로써, 위 증상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급성 악화와 무증상의 기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, 심한 발작이 수일 내지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며, 드물게는 급성 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.

다.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바와 같이,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먼지가 많은 지하 자재창고에서의 업무담당과 부도 후에는 망인의 업무량이 약 2배 정도 증가한 점,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기관지 천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온 점, 사망 직전 약 10일 동안 소외 회사의 자재 창고 이전을 위하여 통상적인 업무 외에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, 위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기관지 천식의 급성악화(발작)로 사망한 점, 기관지 천식은 과로·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먼지 등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으며, 기관지 천식이 악화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망인은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·스트레스 및 먼지 등으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유발된 후에다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에서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, 이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급격히 악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,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.

[결론]

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피고가 2001.1.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'취소' 한다. 